

登記權利證

所有者 吳錫奎 公廳會

此證係由本廳發給
司法書士吳錫奎事務所
電話 五九八七番



서울司法書士會統一用紙

8097

1924.4.23

關檢紙印

登錄稅

金

北谷院經

進行第

二二一號書記料金

員整 司法書士

吳

錫

奎

불 하 등 서

부동산표시

서울특별시

구경동로
상곡4리

가478번지 6호

以上 申張西稅吏署 入基324 2009.12.15

작 대 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하등서 전기대금

상 기 부동산은 당 시 소유인 바 금 반 귀 하에 게 불 하 하고 전 기 대 금

을 정 회 수령 하였 음 으 로 후 일 을 위 하 야 자 에 불 하 증 서 를 작 성

날 인 함

서기 1982년 12월 13일

불하

서기 1986년 4월 13일

불 하 인 서 을 특 별 시

대 표 서울특별시장

金

玄

天

外島特別市城業區貞凌洞田七ノ番地外方

貞凌洞公廳倉庫ハ



進行録
書記料金

二二五
ノ

東京府立
文庫



登記畢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청

매매계약서

1. 물건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 동 가파 번지 4 호

2. 매도대금 (종가격) (공제한금액)

위물건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서울특별시강동구 가파동 매수인 정하영 하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물은 계약보증금으로 1금 한백만원에 상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

제 2 조 물은 매도대금을 감이 발행하는 납입종지서에 의하여 서기 1963년 / 월 / 일까지 감액제 지불한다

제 3 조 매도대금 전액을 영수와 동시에 위부분산의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물은 제 3조에 의하여 부분산의 양도를 받아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실책의 비용은 물의 부담으로 한다

하지 못한다

- 제 8 조 매 거래에 관한 본증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기 1통씩 소지한다

136

강 시 별 특 을 서 포 대

元 訓

서울특별시

가
528
21

領收證

[illegible]

張聖基

地方法院所
司法書士
金觀錦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부장 귀하

제 5 조 을은 본계약의 재산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이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 단 계약체결후 본계약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6 조 을이 제 5 조의 기간내에 매도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거나 제 5 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보증금은 갑의 소독으로 한다

생할시는 중감영수에대한 대금을 평당

490 원의 재산

에 관한 책임은 갑이 지지 아니한다

고 기명날인하여 각기 1 통씩 소지한다

특별지

특별지

장운래



가 500 원지

특별지 城丘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特別市 城丘 眞陵會 地籍 略圖

續 頁 五 頁 力 三 一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眞陵會 동

하

하 카 카 가 파 지

하 카 카 가 파 지

하 카 카 가 파 지

이제 이 땅을 에워



귀 하

성북구 지부장

²한노인

사단법인

인 감 신 고 서

청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부

정릉 2동 부회

대표자 : 장성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78-6

설치년월일: 서기 1978 년 1 월 12 일

날짜 : 20 호

회와 같이 본 본회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단체로서 설립되어 노인인구의 증가에 본 본회에서 사용하는 인력이 불필요함을 신고 합니다.

서 기 1987 년 1 월 13 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부

제 2 회

본 회 장 장 성 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부장 귀하

대장에 서이거

등재년월일

四

한글서체

성요사

吳俊公

卷之四



4) 호에 외거가 옥대장에 서이기

今

日 四八三ノ文修
 口 四八三ノ七修
 己 四八三ノ王修
 二 四八三ノ一修
 一 四八六ノ一修



1. 1호지 1호지
 2. 1호지 1호지
 3. 1호지 1호지
 4. 1호지 1호지
 5. 1호지 1호지

1. 1호지 1호지
 2. 1호지 1호지
 3. 1호지 1호지
 4. 1호지 1호지
 5. 1호지 1호지

고유번호	13-191	건축물관리대장	비고	제부1268-33(83.2.4)호제외가옥대장에사이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78-6	대지면적	허가면적	준공면적
				61.10.20

구조	주용도	건축물			소유권	
		층	면적	적	사유	주민등록번호
전부	주택	1층	66.12	66.12	70.7.20	성북구 정릉동 478-6
		2층	66.12	66.12	70.8.1	성북구 정릉동 478-6

1. 1호지 1호지
 2. 1호지 1호지
 3. 1호지 1호지
 4. 1호지 1호지
 5. 1호지 1호지



위의 초본은 건축물대장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1993년 8 월 1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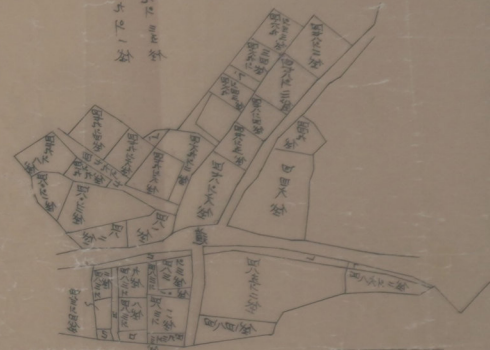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장

수입증지가 인영(첨부) 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1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1가

所有者 山陰洞公康會

登記權利證

4508

827

此證持別本鐘路區瑞麟洞一四六番地
司法書士吳錫奎事務所
電話 卅五九八七番

（註）서울司法書士會統一用紙



위의 초본은 진촉물대장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1993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수인증지가 인영(철부)되지 아니한
본장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수입증지가 인영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효력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